

| | | |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도자료 | |
| | 2025년 7월 10일(목) | 노동안전보건국장 이정훈 010-7380-1932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대표전화 (02)2670-9100 FAX (02)2635-1134 | | |

위험하면 멈춰!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5. 7. 10. 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소통관
- 주최 : 정혜경 국회의원, 민주노총

2) 취지

- 현행 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폭염, 폭우와 같은 기후위기 등의 노동환경 변화와 감정노동, 이주노동자,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구조가 다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사각지대 없이 당사자와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장의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징계, 해고,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어, 작업중지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 조항 등이 필요함.
- ILO의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은 작업중지권 보장과 함께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임에도 이에 발맞춰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법제도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
-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 직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임.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발언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포괄적 취지
- 산별노조 발언

1)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폭염, 폭우 등 기후위기와 작업중지권

2) 금속노조 엄상진 사무처장 :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보장, 징계 등 불이익금지 및 불이익시 처벌

3) 서비스연맹 이현철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감정노동, 특수고용직 적용 등 작업중지권 확대

- 정혜경 대표발의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취지와 통과 필요성

[붙임]

1. 발언문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의의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법률안

[붙임] 1. 발언문

(1)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밝힌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가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업현장에서 위험을 느낀 누구나 작업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습니다. 현장의 위험은 그 작업을 직접 해 온 노동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면 사측의 어처구니없는 손해보상 청구를 각오해야 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작업중지 기간 임금 손실로 생계에 위협을 받아야 하며 하청업체 또한 원청의 책임회피에 어려움에 처합니다.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강행시키는 사측에 저항하지 못하고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이없게도 위험하다고 하지 그랬냐는 핀잔과 노동자 부주의로 책임이 떠넘겨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이 나서서 오랜 시간 공들여 안전을 비용 문제만으로 보는 사측을 설득하고 노사가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도 경영진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과거로 되돌아가기 일쑤입니다.

애매모호하고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작업중지권은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고도 사측의 성급한 해제에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게 합니다.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없이 반복되는 사고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일해야 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베테랑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증언한 사례들을 보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노동자와 노동조합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를 위해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새 정부가 노동자 혐오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던 윤석열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우리 사회에서 생명안전 후퇴 개악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노동안전보건위원장

40.2도. 7월 7일, 경북 구미의 한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20대 청년 노동자의 체온이었습니다. 첫 출근날이 마지막 출근날이 되었습니다. 폭염에 대한 안전 교육이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가 작업장의 노동환경 변화를 의미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노동법과 노동현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휴대폰 충전도 되지 않는 폭염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디지털 공장인 앱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휴식을 취하라”고 하고, 고용노동부의 폭염 가이드라인을 공지합니다. 그러고는, 평소 2,500원이던 배달료를 더 높입니다. 폭우나 태풍이 오면 보너스 미션도 줍니다. 노동자의 구체적인 공간인 도로는 더위에 뒤틀리고, 아지랑이가 어지럽게 피어오릅니다. 노동자의 머리도 팽팽 돕니다. 폭우라도 내리면 도로에 구멍이 나 포트홀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AI는, 안전한 날씨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주고, 폭염에는 “**지금이야말로 돈을 벌 때**”라며 땅 위에 돈을 뿌립니다.

물, 그늘, 휴식. 폭염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여기에 “소득”은 빠져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속에서 일하다가 쓰러지거나, 쾌적한 날씨에 일하면서 손가락을 빨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일자리라도 견디며 돈을 벌거나, 위험한 일자리를 거부하고 소득을 포기하거나.

위험한 일터라는 선택지를 없애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와 국회의 역할입니다. 노동자를 최악의 밸런스 게임 속에 몰아넣고, 그것을 노동자 개인의 선택이라고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폭염·폭우·폭설 시 작업 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따른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가 그런 세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 금속노조 업상진 사무처장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처장으로 있는 업상진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9일 대법원 1부는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관한 징계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16년 7월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공단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리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티오비스는 대기에 노출되는 경우 분해되면서 유독성 기체인 황화수소를 발생시킵니다. 노동조합 지회장이 위험을 인식하고 동료들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징계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 2심 법원은 화학물질 노출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마저 왜곡하고 비과학적인 근거로 위험을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험으로부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협소하게 봤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위험을 사후적으로 판단하고, 법에도 없는 노동자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작업대피, 작업중지권의 의미를 후퇴시켰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을 뒤엎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2024년 4월 4일 파기환송심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으므로 법조문에만 있는 글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업장의 규모,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노동조합 유무와 관계없이 위험으로부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권리

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거부할 용기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고, 기업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된다고 한다면 1년 365일 동안 지금도 2천 명이 사망하는 노동현장 비극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조선소에서는 야간작업이 위험하다고 하는 하청업체 관리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원청이 작업을 강행시켜서 32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고귀한 한 목숨이 숨졌습니다. 지난 겨울 어떤 제철소에서는 얼어붙은 현장 비계가 위험하다는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10여 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에서 10위권 내의 규모를 가진, 선진 경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부러워하고 벤치마킹하려고 애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일 할 수 있는지, 오늘도 죽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지 걱정하는 참으로 불행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금속노조는 올해 모든 사업장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통일요구를 작업중지권 확보 단 하나로 압축했습니다.

온전한 작업중지권 쟁취없이 교섭은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며 총파업투쟁을 전개해서라도 반드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입니다.

현장에서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위험을 감지하였을 때 작업을 중지할수 있는 제대로 된 작업중지권이 노동현장에 자리 잡아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금속노조가 끝까지 힘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4) 서비스연맹 이현철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대공장이나 건설현장은 소위 위험산업으로 사회적인 인지가 퍼져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서비스현장도 사람의 인격, 정신이 훼손되고 삶이 지옥이 되는 위험 업무가 많습니다. 서비스노동자의 작업중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산안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산안법에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이 생긴지 7년째이지만, 백화점.면세점.마트와 같은 판매서비스 노동자가 아직도 가장 힘든 업무로 꼽는 것은 소위 ‘진상고객’ 응대입니다. 고객이 폭력적인 언동이 있으면 노동자는 그 장소를 이탈하는 등의 작업중지를 하고, 관리자가 조치하도록 법과 단협,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는 현장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개인은 서비스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크고, 원청인 면세점.백화점에서도 고객을 저지하는 등의 조치를 즉시적

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문직종인 가전제품 설치수리나 방문점검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고객의 집 등 방문지로 직접 가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업무특성이 있고, 게다가 업무의 일거수 일투족이 고객설문으로 평가되어 인사고과까지 반영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정수기 점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달라는 고객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도, 칼을 들이치는 물리적 폭력이나 성적 언동을 하는 고객집 방문을 거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한 서비스현장의 수많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하청, 플랫폼 노동자가 작업중지의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불별 더위가 며칠째 계속 되는 요즘, 특수고용직인 코웨이 코디코닥 방문점검 노동자가 노동부 폭염 가이드에 따라 시원한 얼음물을 지급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는 “너무 더울 때 얼음물 마시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참고로 노동부 폭염가이드에는 ‘폭염 집중시간대를 피한 작업시간대 조정’ 과 같이 폭염시 일정시간 작업중지를 권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곧, 폭염시 사업주 보건조치 세부내용이 법제화 될거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고노동자까지 적용하는 법이 아니라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폭염 속의 노동자가 절박하게 요청하는 내용도 궤변으로 뭉개는 코웨이같은 사례가 많아질 뿐입니다.

건당 수수료가 임금인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중지의 권리가 특고 플랫폼노동자까지 적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현장노동자가 생계걱정 없이 마음놓고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손실보전 대안이 법 내용에 담겨야 합니다.

이에, 정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서비스연맹은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통과되어 서비스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건강 권리가 보장되고, 우리나라가 산재1위 공화국의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생활가전 렌탈업체 코웨이 회사 관계자 문자메시지 (좌 /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제공)

※ 7/9 가전통신서비스노조 폭염감시단 가전제품 방문점검 노동자 이동차량 차내 온도 (우 /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제공)

(5) 정혜경 대표발의 의원

안녕하세요? 현재
각 지국에는 음수용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음정수기가
설치된 곳도 있구요.
무더운 여름에 찬물이나
얼음물을 마시는 경우
정맥과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여 뇌졸중 위험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조합에서도
얼음물을 고집하는
것보다 개인별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조합원에게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9:35



입니다.

산안법 개정안 발의를
민주노총, 산별노조 동지들과 함께 선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동발의로 함께해 주신
13분의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발의되는 산안법 개정안의 주요사항으로는
첫째, 특수고용노동자와 서비스직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명시하였고

둘째,
폭염 폭우 폭설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에 따른 악천후가 있을 경우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셋째, 작업 중지사 급여를 보호하고
사업주와 도급인이
작업지연으로 인한 비용과 손실을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넷째,

작업중지권이 사업주와 노동자 개인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대표와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섯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주가
작업중지 명령의 해제를 원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다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결과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의무사항도 명시 했습니다.

그 밖에 개정안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별칙 조항들도 손 봤습니다.

현장에서 극단적 상황에 몰린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토대와 도구를 마련하고,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바로 정치의 사명이자 본질적 역할일 것입니다.

저는 진보당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산안법 개정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노동자들이
ILO 제 155호 협약과 같은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나라

달라진 기후환경과 산업환경에 맞추어
법과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사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세우는
노동존중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저의 사명과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위험하면 멈춰야 합니다.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산안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의의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작업중지 대상 확대 및 명확화

○ 사업주의 작업중지

- 폭염, 폭우, 폭설 등 사업주 작업 중지 의무를 확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 감정노동 등으로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 작업중지 요건을 각호로 규정하여 명확하게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특수고용 노동자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하기 위해 사업주, 근로자 정의에 명시

○ 노동자의 작업중지

- 노동조합,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권 부여
- 작업 전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미비 등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 산재 발생 위험 여부를 떠나 안전보건조치가 미비하면 작업거부, 작업중지할 수 있도록 함. 폭염, 폭우 등 기후로 인한 위험, 감정노동 등으로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하고, 각호로 명시하여 규정함.
- 작업중지 기간 동안의 임금. 자연 재난으로 인한 임금과 소득 보전 의무 명시하고, 하청 노동자의 임금, 하청업체의 공기, 손실 보전 등에 대한 원청의 연대책임을 규정.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작업중지가 실질화 되도록 함.
-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한 불이익 처우시 형사처벌 도입
- 안전 작업이 보장되도록 개선 조치 전에는 작업 복귀 명령하지 못하도록 함.

(2) 노동부 전면 작업 중지 명령 실질화

○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 작업중지명령

-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은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산업재해 관련 주지의 원칙인 하인리히 원칙처럼 중대재해는 사업장의 수백 수천의 위험요인과 구조적인 문제가 표출되는 것으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경고임.
- 그간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부의 전면 작업중지명령은 삭제되었고, 작업중지명령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였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노동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필요함.
-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조사 및 개선 대책의 수립과 이행> 이라는 작업중지 명령의 목표를 명확히 함.

(3) 작업 중지 해제 전 노동자 참여, 현장 개선 확인 절차 규정

- <유해위험이 개선되기 전에는 작업재개 불가> 명시되고, 위반 시 처벌.

- 작업재개하고자 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자 통해 현장개선 확인, 노동자대표 추천 전문가 포함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절차마련.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의

(1)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 폭염 폭우 등 기준 명시. 특수고용, 감정노동 등 범위 확대

- 급박한 위험만이 아니라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권 보장이 재해의 선제적 예방으로 이어짐.
- 감정노동, 방문 노동으로 인한 폭행, 폭언등 작업중지권 행사의 범위가 사고성 재해만이 아니라 는 것을 명확히 함.
- 기후 위기로 더욱 심각해진 폭염, 폭우, 폭설, 강풍 등 에 대한 작업 중지 기준을 명확히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특수고용 노동자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하기 위해 사업주, 근로자 정의에 명시함.

(2)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보장

- 연속적으로 동시 작업이 진행되는 사업장에서 ‘개별 노동자’의 개별 작업 거부권은 의미도 실질 작동 가능성도 없음.
- 다수 외국에서 하청, 특수고용등 사업장 전체 노동자에 작업중지권이 부여되고, ‘노동조합’의 안전대표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과 관계 없이 위험은 발생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것이 전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이기 때문임. 생명과 안전과 건강의 문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권리임.

[외국의 노동자 +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보장 법제화 사례]

| 국가 | 작업중지권 관련 규정 |
|--------------------|--|
| ILO 제155조 산업안전보건협약 | [제13조] 근로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 이에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어 작업환경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한 경우 국내여건과 국내관행에 따른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제19조] 사업장 차원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바) 근로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모든 상황을 자신의 직속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구제조치를 취하기 전에 생명이나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작업 상황으로 복귀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
| 중국 | 안전생산법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안전보건 규칙을 위반한 작업명령도 거부권 부여. |
| 캐나다 | -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거부권 부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 되는 경우도 부여 - 위험에 대해 노사간 판단이 다르면 노사 모두 동의할 때만 작업 거부권 번복 가능. 사 |

| | |
|--|---|
| | 업주의 일방 적업 재개 불가 |
| 프랑스 | - 노동자가 위험작업을 중지하기 전에 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중지권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 둘 수 없음 |
| 영국 | - 하청, 특수고용 모든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보장 |
| 호주 | - 노동자 안전대표에게 작업중지권 보장 - 하청, 파견 등 모든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보장 |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 - 노동자 안전대표에게 작업중지권 보장 - 하청, 파견 등 모든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보장 |

(3)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를 해고, 징계하는 사업주 처벌 법제화

- 1995년부터 도입된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무력화된 것은 징계와 손해배상을 남발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임
-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 도입은 2015년부터 정부의 입법 발의도 수 차례 있었으나, 추진되지 못함.**
- 이에 개정안에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처벌조항 도입

(4) 작업중지 기간의 노동자 임금, 하청업체 손실보전 법제화

- 작업중지 기간의 하청 노동자 임금과 하청업체 손실을 원청이 책임지도록 법제화 되지 않으면 **저가 낙찰과 저임금에 허덕이는 하청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현실화될 수 없음**
- 건설노조의 기나긴 투쟁으로 폭염 시 작업중지를 하는 공공 건설현장은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공기, 손실 보전을 국가예약법에 명시함. 전체 노동자 적용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함.
- 특히, 폭염, 폭우등 기후위기 가속화로 인한 작업중지의 경우 자연재난으로 사업주의 임금보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임금 보전에 대한 방안 마련의 법제화가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작업중지 기간 임금 보전, 손실보전 원청 공동연대 책임을 법제화하고 국가 지원 조항을 명시함**

(5) 완전한 개선 조치 이후 작업재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작업 중지 해제 전 노동자 참여 보장 및 현장 개선 확인 절차 명확히 규정

- 작업중지 이후 완전한 개선조치가 되기 전에 사업주의 작업재개를 허용하는 것은 작업중지권 보장이 아니며,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 위반임.
- **완전한 개선 조치 이전에는 작업복귀 시키지 못하도록 명확히 명시되어야 함.**
- 이에 ‘완전한 개선 조치 이후 작업재개’ 가 명시되고, 위반 시 처벌조항 도입함.

[붙임]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정혜경 의원 등 14인(정혜경, 전종덕, 윤종오, 용혜인, 손솔, 이용우, 정을호, 김준형, 서미화, 최혁진, 민병덕, 이재강, 한창민, 신장식)

제안이유

현행 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등의 노동환경의 변화와 감정노동, 이주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구조가 다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당사자와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함. 현장의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징계, 해고,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음.

ILO의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은 작업중지권 보장과 함께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임에도 이에 발맞춰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작업 중지 명령을 실질화해야 함.

주요내용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를 확대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규정된 특수고용 노동자의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 중지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기후로 인한 위협과 감정노동 등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개정)

하청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작업중지 기간의 임금과 소득 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하청 노동자의 임금, 하청업체의 공기, 손실 보전 등에 대한 원청 업체의 연대 책임을 규정함.(안 제51조제2항, 제52조제5항 신설)

안전 작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사 및 개선 조치 전에는 다시 작업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작업 중지 해제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여 현장 개선 확인 절차를 규정하여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함.(안 제55조)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함. (안 168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67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을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52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으로, “작업을” 을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52조에서 같다)의 작업을” 로,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을 “작업장소에서 대피 및 휴식을 부여하는” 으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유해 위험이 개선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시키지 못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2. 작업 전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미비하거나, 유해위험요인의 노출로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3. 폭염 작업, 폭우, 폭설, 한랭, 강풍, 미세먼지 등 악천후로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사업주는 작업 중지애 따른 임금 감소분의 전부를 보전해야 한다.
- ③ 국가는 악천후 작업중지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중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을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로, “대피할” 을 “대피하거나 대피시킬”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는” 을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감독자등은” 을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등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를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게 작업재개를 요구하지 못한다”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2. 작업 전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미비하거나, 유해위험요인의 노출로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3. 폭염 작업, 폭우, 폭설, 한랭, 강풍, 미세먼지 등 악천후로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 도급인은 근로자의 작업중지 기간 동안의 임금, 수급인의 작업 지연으로 인한 비용과 기간의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며 공동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을 “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다음” 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를 “작업의” 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건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을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의 해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으로,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를 “사전에 유해위험 요인 개선 내용에 대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중지명령” 으로, “요청한” 을 “요청받은” 으로,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를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근로자 대표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확인하고, 작업중지 해제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중지해제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 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를 “전원동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작업

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중지 해제 이후 사업주가 제출한 개선계획의 이행에 대해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 및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8조제1호 중 “제54조제1항” 을 “제52조제4항, 제54조제1항” 으로 한다.

제169조제1호 중 “제63조” 를 “제52조제5항, 제63조”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법률 제2067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2067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

<신 설>

<신 설>

<신 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
다.

<신 설>

<신 설>

<신 설>

있는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 장애가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

② 사업주는 작업 중지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전부를 보전해
야 한다.

③ 국가는 악천후 작업중지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대
피하거나 대피시킬-----.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2. 작업 전 안전조치, 보건조치
가 미비하거나, 유해위험요인
의 노출로 생명과 안전에 우
려가 있는 경우

3. 폭염 작업, 폭우, 폭설, 한
랭, 강풍, 미세먼지 등 악천
후로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신 설>

4.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③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등은-----

④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게 작업재개를 요구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 도급인은 근로자의 작업중지 기간 동안의 임금, 수급인의 작업 지연으로 인한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

비용과 기간의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며 공동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

-----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다음-----작업의-----
-----.

1. 2. (현행과 같음)

3.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작업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의 해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 사전에 유해위험 요인 개선 내용에 대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중지명령-----요청받은-----근로감독관으로

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

하여금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확인하고, 작업중지 해제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야-----.

④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중지해제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전원동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중지 해제 이후 사업주가 제출한 개선계획의 이행에 대해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 및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8조(벌칙) -----

-----.

1. -----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
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
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생략)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
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
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
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
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자

2. ~ 6. (생략)

----제52조제4항, 제54조제1
항-----

2. (현행과 같음)

제169조(벌칙) -----

-----.

1. -----제52
조제5항, 제63조-----

2. ~ 6. (현행과 같음)